

한국은행 국고 업무지속계획 [참가기관용]

2023. 2.

한국은행 금융업무실 국고팀

I. 기본사항

1. 목 적	iii-1
2. 비상상황 구분	iii-1
3. 기관별 대응 원칙	iii-3

II. 비상상황별 국고업무 복구 및 복원 요령

1. 물적재해[금융기관]	iii-4
2. 물적재해[기획재정부(dBrain)]	iii-19
3. 인적재해	iii-34
<별지서식>	iii-37

III. 비상연락체제 및 수단

 iii-41

I 기본사항

1 목적

- 재난*으로 인한 국고업무 중단의 위험을 예방하고 재해**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국고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함으로써 국고금 수급업무의 안전성 확보

* 재난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위험의 원인으로 자연재난, 사회재난 및 기술적 장애로 구분

** 재해는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 물적재해와 인적재해로 구분

⇒ 한국은행 「국고 업무지속계획」에 따라 참가기관(기획재정부, 우정사업본부, 금융기관, 금융결제원)이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고업무 지속성 유지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

2 비상상황 구분

가. 물적재해

구분	상 황 내 용
상황 I	한국은행 회계서버와 중계기기(통신회선 포함)는 정상적으로 가동되지만 참가기관(기획재정부 포함)의 서버 또는 중계기기(통신회선 포함)에 장애가 발생하여 국고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
상황 II	한국은행 회계서버는 정상적으로 가동되지만 국고전산망 중계기기에 장애가 발생하여 참가기관과의 파일 송수신 등 국고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
상황 III	한국은행 회계서버 관련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등에 장애가 발생하여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국고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

구분	상 황 내 용
상황 IV	한국은행 주IT센터의 국고전산망 관련 전산기기 등에서 전면장애 또는 재해가 장기간 지속되어 재해복구센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
상황 V	한국은행 주IT센터 및 재해복구센터의 국고전산망 관련 전산기기 등에 전면 장애 또는 재해가 동시에 발생하여 양 센터 모두 장기간 복구가 불가능하고 수작업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상황
상황 VI	한국은행 본부에 재해가 발생하여 본부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, 재해가 장기간 지속되어 대체근무장소(강남본부)로의 근무지 이동이 필요한 상황
상황 VII	한국은행 본부 및 강남본부에 재해가 발생하여 대체근무장소(대전세종충남본부)로의 근무지 이동이 필요하며, 동시에 주IT센터 국고전산망 관련 전산기기 등에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센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

나. 인적재해

상황별	상 황 내 용
상황 A	한국은행 국고팀 직원 중 소수(20% 미만)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
상황 B	한국은행 국고팀 직원 중 일부(20~50% 미만)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
상황 C	한국은행 국고팀 직원 중 상당수(50~75% 미만)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
상황 D	한국은행 국고팀 직원 중 대다수(75% 이상)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
상황 E	한국은행 국고팀에 인적재해가 발생한 데다 해당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

3 기관별 대응 원칙

가. 한국은행

- 「국고 업무지속계획(참가기관용)」 등을 작성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 보완하여 각 참가기관앞 통보
 - 참가기관과의 긴급 연락체계 구축을 위해 비상연락처를 유지·관리
- 장애발생시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장애상황 및 대응조치요령 등을 참가기관앞 통보

나. 참가기관(금융기관 및 기획재정부 등)

- 자체 주전산센터의 장애 및 재해시 전산백업센터에서도 국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백업체계 구축
- 한국은행이 통보한 「국고 업무지속계획(참가기관용)」 중 필요한 사항은 자체비상계획 등에 적극 반영하고 주기적으로 훈련 실시
- 「국고 업무지속계획(참가기관용)」 관련사항은 각 업무담당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인수인계해야 할 필수사항으로 설정, 관리
- 한국은행이 「국고 업무지속계획」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각종 모의훈련에의 참가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참가
- 주요 문서 및 기록들에 대한 목록을 정의하고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보관
- 비상상황 발생시 한국은행 담당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전담직원을 정하고 비상연락처*를 가장 최근의 상태로 유지
 - * 비상상황 VI, VII의 경우 대체근무장소 연락처 포함

II 비상상황별 국고업무 복구 및 복원 요령

1. 물적재해[금융기관*]

* 우정사업본부(우체국) 및 금융결제원 포함

[상황 I]

한국은행 회계서버와 증계기기(통신회선 포함)는 정상적으로 가동되지만 참가기관의 서버 또는 증계기기(통신회선 포함)에 장애가 발생하여 국고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

□ 업무 복구(Resumption) 계획

단위업무	한국은행	금융기관 (우정사업본부 및 금융결제원 포함)
(1) 국고금 수납	[단기장애] - 수납내역(A1) 파일을 대체매체를 통해 제출받아 처리 ○ 대체매체로 접수 불가능시 복구시까지 보고 접수 보류 - 수납내역 처리결과(F6) 파일을 대체매체를 통해 송부 ○ 대체매체를 통한 송부가 불가능한 경우 복구시까지 유선 통보	[단기장애] - 수납내역(A1)은 대체매체를 통해 제출 ○ 대체매체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복구시까지 보고 중단 - 수납내역 처리결과(F6) 파일을 대체매체로 접수받아 처리 ○ 대체매체를 통한 수신이 불가능할 경우 복구시까지 유선 통보를 받아 처리
	[장기장애 : 1주일이상 미복구] - 국고금 수납 취급 중단 요청	[장기장애 : 1주일이상 미복구] - 국고금 수납 취급 중단
(2) 실시간 전자이체	- 장애 발생기관앞 이체 중단	—
	[계좌이체 의뢰후 장애 발생] - 이체처리결과 미수신 건은 「국고금 실시간 이체거래 처리결과 통보」(별지 제63호 서식)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처리 - 거래집계 및 거래내역대사는 「국고금 실시간 이체거래 집계 결과 통보」(별지 제64호 서식)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처리	[계좌이체 수신후 장애 발생] - 계좌이체의뢰 수신후 미응답건에 대해서는 「국고금 실시간 이체거래 처리결과 통보」(별지 제63호 서식)를 작성하여 송부 ○ 미응답 건의 입금성공여부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“입금실패”로 처리 - 거래집계 및 거래내역대사는 「국고금 실시간 이체거래 집계 결과 통보」(별지 제64호 서식)를 작성하여 제출

단위업무	한국은행	금융기관 (우정사업본부 및 금융결제원 포함)
	- ‘예비종료’ 또는 ‘거래종료’ 등 실시간운용거래에 대한 응답은 생략	—
(3) 국제환급금 지급(계좌 확인 포함)	[이체의뢰 전 장애 발생] - 장애발생 기관을 제외하고 환급금 이체 실시	[이체의뢰 수신 전 장애 발생] —
	[이체 의뢰 후 장애 지속시] - 처리결과(A5,A6) 파일을 대체매체를 통해 제출받아 처리 - 대체매체로 접수 불가능시 ○ 계좌이체결과는 ‘입금실패’로 계좌확인은 ‘오류’로 처리 ○ 우정사업본부앞 현금지급요구분은 ‘정상처리’된 것으로 간주하며, 현금지급취소요구분은 ‘취소불능’으로 처리	[이체의뢰 수신 후 장애 지속시] - 처리결과(A5,A6)파일을 대체매체를 통해 제출 - 대체매체를 통해 송부가 불가능할 경우(한국은행과 동일하게 처리) ○ 계좌이체결과는 ‘입금실패’로 계좌확인은 ‘오류’로 처리 ○ 우정사업본부는 현금지급요구분은 ‘정상처리’로, 현금취소요구분은 ‘취소불능’으로 처리
(4) 국고예금 거래내역	[15:00이후 장애 지속시] - 장애발생 기관을 제외하고 처리	—
	[3일이상 장애 지속시] - 장애기관앞 국고예금 계속 취급 여부를 결정토록 요구 <국고예금 계속 취급> - 신규계좌 개설 제한 요구	[3일이상 장애 지속시] - 국고예금 계속 취급여부를 결정하여 한국은행앞 통지 <국고예금 계속 취급> - 신규계좌 개설 제한 조치

단위업무	한국은행	금융기관 (우정사업본부 및 금융결제원 포함)
	<p><국고예금 취급 중지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고예금 거래내역(A3) 파일을 대체매체를 통해 제출받아 처리 - 기획재정부앞 장애발생 금융기관의 국고예금을 인출하여 비장애 금융기관으로 예탁토록 안내 - 출납공무원앞으로 국고예금계좌 신설 신고시 장애기관의 국고예금 인출금액을 기재토록하여 당행 국고예금원장 정리 	<p><국고예금 취급 중지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미전송한 국고예금 거래내역(A3) 파일은 대체매체를 이용하여 송부 <p>—</p> <p>—</p>
(5) 국고관련 정보파일 송수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고계좌 신설·폐지 정보(F4) 및 우체국수급금 내역(F5)은 장애 복구 후 전송하며 당일중 미복구시 서면(전산시스템 출력물)으로 송부 ○ 국고계좌 신설·폐지는 긴급한 경우외에는 복구후 처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국은행으로부터 서면으로 통지받은 국고계좌 신설·폐지 내역을 자체 전산시스템에 입력 - 우정사업본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서면으로 통지 받은 우체국수급내역을 자체 전산시스템에 입력

□ 업무 복원(Restoration) 계획

단위업무	한국은행	금융기관 (우정사업본부 및 금융결제원 포함)
(1) 국고금 수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누락된 수납내역을 복구일의 수납내역(A1)파일에 포함하여 수신 <p>[장기장애로 국고금수납 중단시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각 통할점은 금융기관 결제모점으로부터 미수신 수납내역에 대한 국고금 납부서 사본을 제출받아 전산 입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미전송 수납내역을 복구일의 수납내역(A1)파일에 포함하여 전송 <p>[장기장애로 국고금수납 중단시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결제모점은 미전송 수납내역에 대한 국고금 납부서 사본을 통할점앞 제출
(2) 실시간 전자이체	—	—
(3) 국세환급금 지급(계좌 확인 포함)	—	—
(4) 국고예금 거래내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누락된 거래내역을 복구일의 거래내역(A3)에 포함하여 수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미송신한 거래내역을 복구일의 거래내역(A3)에 포함하여 전송 ○ 누락거래는 기산일 거래로 파일 생성
(5) 국고관련 정보파일 송수신	—	—

【상황 II】

한국은행 회계서버는 정상적으로 가동되지만 국고전산망 중계기에 장애가 발생하여 참가기관과의 파일 송수신 등 국고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

□ 업무 복구(Resumption) 계획

단위업무	한국은행	금융기관 (우정사업본부 및 금융결제원 포함)
(1) 국고금 수납	[당좌차기방식 국고금 수납] - 국고금 수납은 계속 수행	[당좌차기방식 국고금 납부] - 당좌차기방식에 의한 국고금 납부시 단말접속방식으로 전환*하여 납부 * 한은금융망 서버접속 이용기관
	[금융기관 수납분의 처리] <당일중 장애 복구시> - 복구시까지 대기한 후 복구후 수납내역(A1) 및 수납내역 심사결과(F6) 송수신 <당일중 장애 복구가 어려운 경우> - 미수신된 수납내역(A1)은 대체매체를 통해 제출받아 처리 ○ 대체매체로 제출할 수 없는 기관은 제외	[금융기관 수납분의 처리] <당일중 장애 복구시> - 복구시까지 대기한 후 복구후 수납내역(A1) 및 수납내역 심사결과(F6) 송수신 <당일중 장애 복구가 어려운 경우> - 미송신한 수납내역(A1)은 대체매체를 통해 제출 ○ 대체매체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생략(복구후 송신하는 수납내역에 포함)
	- 미 송신한 수납내역 심사결과(F6)는 대체매체를 통해 송부 ○ 대체매체로 수신이 곤란한 기관은 제외	- 미 수신한 수납내역 심사결과(F6)는 대체매체로 접수받아 처리 ○ 대체매체로 수신이 곤란한 기관은 서면 등으로 송부받아 처리
(2) 실시간 전자이체	[이체의뢰전 장애 발생] - 장애복구시까지 금융기관앞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 업무 중단	[이체의뢰 수신전 장애 발생] - 장애복구시까지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 업무 중단

단위업무	한국은행	금융기관 (우정사업본부 및 금융결제원 포함)
	[이체의뢰후 장애 발생] - 이체처리결과 미수신 건은 「국고금 실시간 이체거래 처리결과 통보」(별지 제63호 서식)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처리 - 거래집계 및 거래내역 대사는 「국고금 실시간 이체거래 집계결과 통보」(별지 제64호 서식)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처리 - ‘예비종료’ 또는 ‘거래종료’ 등 실시간 운용거래에 대한 응답은 생략	[이체의뢰 수신후 장애 발생] - 이체의뢰 수신건에 대해 「국고금 실시간 이체거래 처리결과 통보」(별지 제63호 서식)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 - 거래집계 및 거래내역 대사는 「국고금 실시간 이체거래 집계결과 통보」(별지 제64호 서식)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 -
	[익일이후 장애복구시까지] - ‘예비종료’, ‘거래집계 및 거래내역대사’, ‘거래종료’에 대한 응답 생략	[익일이후 장애복구시까지] - ‘예비종료’, ‘거래집계 및 거래내역대사’, ‘거래종료’에 대한 응답 없이 종료
(3) 국제환급금 지급(계좌 확인포함)	[A4대사 전 장애 발생] - 이체의뢰(G4,G5) 및 처리결과(A5,A6) 파일을 대체매체를 통해 처리 ○ 대체매체에 의한 처리가 불가능한 기관은 제외	[A4대사 전 장애 발생] - 이체의뢰(G4,G5) 및 처리결과(A5,A6) 파일을 대체매체를 통해 처리 ○ 대체매체에 의해 처리하지 않는 기관은 당일 처리내용 없음
	[A4대사 후, 이체의뢰 전 장애 발생] - [A4대사 전 장애 발생]과 동일하게 처리 - 우정사업본부가 대체매체에 의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현금지급요구분은 전부 정상처리되며, 현금지급 취소요구분은 당행이 전부 ‘취소불능’으로 처리	[이체의뢰 수신 전 장애 발생] - [A4대사 전 장애 발생]과 동일하게 처리 - 우정사업본부는 대체매체에 의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현금지급요구분은 ‘정상처리’로, 현금취소요구분은 ‘취소불능’으로 처리

단위업무	한국은행	금융기관 (우정사업본부 및 금융결제원 포함)
	<p>[이체의뢰 후 장애 지속시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6시 이후까지 장애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체 처리 결과(A5,A6) 파일을 대체매체로 제출받아 처리 o 대체매체로 제출이 불가능한 기관의 이체의뢰 및 계좌확인 건은 전부 오류 처리 - 우정사업본부가 대체매체에 의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현금 지급요구분은 전부 정상처리되며, 현금지급 취소요구분은 당행이 전부 '취소불능'으로 처리 	<p>[이체의뢰 수신 후 장애 지속시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6시 이후까지 장애가 지속될 경우 이체 처리결과(A5,A6) 파일을 대체매체로 제출 o 대체매체로 제출이 불가능한 기관은 이체의뢰 건을 전부 '입금불능'으로 처리 - 우정사업본부는 현금지급요구 분은 '정상처리'로, 현금취소요구분은 '취소불능'으로 처리
(4) 국고예금 거래내역	<p>[당일중 장애 복구시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애복구 후 국고예금 거래내역(A3) 파일을 수신 	<p>[당일중 장애 복구시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애복구 후 국고예금 거래내역(A3) 파일을 송신
	<p>[당일중 장애 미복구시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미 수신된 국고예금 거래내역(A3) 파일을 대체매체로 제출받아 처리 o 대체매체 송신이 불가능한 기관은 제외후 처리 	<p>[당일중 장애 미복구시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미 송신한 국고예금 거래내역(A3) 파일을 대체매체를 통해 송부 o 대체매체 송신이 불가능한 기관은 송신 생략(복구후 송신하는 거래내역에 기산일 거래로 포함)
(5) 국고관련 정보파일 송수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고계좌 신설·폐지 정보(F4) 및 우체국수급금 내역(F5)은 장애 복구 후 전송하며, 당일중 미복구시 서면(전산시스템 출력물)으로 송부 o 국고계좌 신설·폐지는 긴급한 경우외에는 복구후 처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국은행으로부터 서면으로 통지받은 국고계좌 신설·폐지 내역을 자체 전산시스템에 입력 - 우정사업본부는 서면으로 통지받은 우체국수급내역을 자체 전산시스템에 입력

□ 업무 복원(Restoration) 계획

단위업무	한국은행	금융기관 (우정사업본부 및 금융결제원 포함)
(1) 국고금 수납	- 누락된 수납내역을 복구일의 수납내역(A1) 파일에 포함하여 수신	- 수납내역을 대체매체 등으로 송신하지 못한 기관은 복구후 최초 수납내역 송신시 미송부 거래내역을 포함
(2) 실시간 전자이체	-	-
(3) 국제환급금 지급(계좌 확인 포함)	-	-
(4) 국고예금 거래내역	- 누락된 거래내역을 복구일의 거래내역(A3)에 포함하여 수신	- 거래내역을 대체매체 등으로 송신하지 못한 기관은 복구 후 최초 거래내역 송신시 미송신 거래내역을 기산일 거래로 포함
(5) 국고관련 정보파일 송수신	-	-

【상황 III】

한국은행 회계서버 관련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등에 장애가 발생하여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국고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

□ 업무 복구(Resumption) 계획

단위업무	한국은행	금융기관 (우정사업본부 및 금융결제원 포함)
공 통	- 아래 업무를 제외하고는 복구시 까지 중단 ○ 긴급 지출건은 지출관으로부터 「국고금 입금(대체)요구서」를 서면으로 접수하여 지출 ○ 우정사업본부 어음교환 등 차액결제*, 우체국 과초금수납 및 자금지급* 업무 수행 * 예탁금 잔액 부족시 예탁금 운용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차기의뢰서를 제출받아 처리	- 아래 업무를 제외하고는 복구시 까지 중단 ○ 한국은행으로부터 「국고금 입금요구서」를 접수하는 경우 해당계좌에 입금* * 입금자금은 한국은행에 개설된 금융기관 당좌예금에 입금 ○ 우정사업본부는 어음교환 등 차액결제 및 우체국자금 지급에 필요한 예탁금 잔액이 부족할 경우 예탁금 운용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당좌차기의뢰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에 송부토록 요청
	[복구에 2시간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] - 재해복구센터로 전환하여 업무 재개(상황IV)	—
	[당일중 복구 및 재해복구센터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] - 수작업으로 전환하여 업무재개(상황V)	—

□ 업무 복원(Restoration) 계획

단위업무	한국은행	금융기관 (우정사업본부 및 금융결제원 포함)
(1) 공 통	[당일중 장애 복구시] - 장애기간 중 수작업 처리업무* 전산입력 및 마감 * 우체국 어음교환 등 차액결제, 우체국과초금 수납 및 우체국자금 지급, 세입금 수납 등	[당일중 장애 복구시] —
(2) 국고금 수납	[의일이후 장애 복구시] - 미송신 국고금 수납내역은 장애 복구일의 수납내역(A1) 파일에 포함하여 수신	[의일이후 장애 복구시] - 미송신 국고금 수납내역을 장애 복구일 수납내역(A1) 파일에 포함하여 송신
(3) 실시간 전자이체	—	—
(4) 국제환금금 지급(계좌 확인 포함)	—	—
(5) 국고예금 거래내역	[의일이후 장애 복구시] - 장애기간중 거래내역을 복구일의 거래내역(A3) 파일에 포함하여 수신	[의일이후 장애 복구시] - 장애기간중 미송신한 거래내역을 복구일의 거래내역(A3) 파일에 포함하여 전송 * 기산일 거래로 파일 생성
(6) 국고관련 정보파일 송수신	—	—

【상황 IV】

한국은행 주IT센터의 국고전산망 관련 전산기기 등에서 전면장애 또는 재해가 장기간 지속되어 재해복구센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

□ 업무 복구(Resumption) 계획

단위업무	한국은행	금융기관 (우정사업본부 및 금융결제원 포함)
공 통	- 재해복구센터로의 전환	-

□ 업무 복원(Restoration) 계획

단위업무	한국은행	금융기관 (우정사업본부 및 금융결제원 포함)
공 통	- 거래의 정상처리 여부 검증 ○ 주IT센터에서 처리한 거래내역과 재해복구센터에서 처리한 거래내역이 장애복구 후 주IT센터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여부	-

【상황 V】

한국은행 주IT센터 및 재해복구센터의 국고전산망 관련 전산기기 등에 전면장애 또는 재해가 동시에 발생하여 양 센터 모두 장기간 복구가 불가능하고 수작업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상황

□ 업무 복구(Resumption) 계획

단위업무	한국은행	금융기관 (우정사업본부 및 금융결제원 포함)
공 통	- 「국고업무 수작업 지침 및 매뉴얼」에 따른 업무별 세부 처리지침 통보 - 수작업에 의한 국고업무 재개	- 국고업무주관부서는 각 국고대리점앞 국고업무 수작업 실행 지침 안내 - 각 국고대리점은 수작업에 의한 국고업무 재개

□ 업무 복원(Restoration) 계획

단위업무	한국은행	금융기관 (우정사업본부 및 금융결제원 포함)
공 통	- 각 통할점은 수작업에 의한 국고업무 취급 건을 전산시스템에 입력 등 조치 - 본부의 수작업업무 복원지침에 따라 정당내역으로 정정 처리 등을 수행 - 금융기관에서 장애기간 중 수납한 국고금에 대한 자금결제 정당여부 검증	- 장애기간중 수납한 국고금 수납내역(A1) 전송 - 장애기간 중 수납한 국고금에 대한 자금결제 정당여부 검증

【상황 VI】

한국은행 본부에 재해가 발생하여 본부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, 재해가 장기간 지속되어 대체근무장소(강남본부)로의 근무지 이동이 필요한 상황

□ 업무 복구(Resumption) 계획

단위업무	한국은행	금융기관 (우정사업본부 및 금융결제원 포함)
공 통	- 대체근무장소(강남본부)로 이동하여 업무 재개 ○ 우체국 과초금 수납 및 우체국자금 지급청구 업무는 강남본부를 방문토록 서울중앙우체국앞 안내	- 서울 중앙우체국은 우체국 과초금 불입 및 우체국자금 지급청구 업무*를 한국은행 강남본부를 방문하여 처리 * 과초금 불입서 및 자금 청구서에 통할점은 한국은행 국고팀으로 작성

□ 업무 복원(Restoration) 계획

단위업무	한국은행	금융기관 (우정사업본부 및 금융결제원 포함)
공 통	—	—

【상황 VII】

한국은행 본부 및 강남본부에서 재해가 발생하여 대체근무장소(대전세종충남본부)로의 근무지 이동이 필요하며, 동시에 주IT센터의 국고전산망 관련 전산기기에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센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

□ 업무 복구(Resumption) 계획

단위업무	한국은행	금융기관 (우정사업본부 및 금융결제원 포함)
공 통	- 대체근무장소(대전세종충남본부)로 이동하여 업무 재개 ○ 우체국 과초금 수납 및 우체국자금 지급청구 업무는 대전세종충남본부로 방문토록 서울중앙우체국앞 안내	- 서울 중앙우체국은 우체국 과초금 불입 및 우체국자금 지급청구 업무*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를 방문하여 처리 * 과초금 불입서 및 자금 청구서에 통할점은 한국은행 국고팀으로 작성

□ 업무 복원(Restoration) 계획

단위업무	한국은행	금융기관 (우정사업본부 및 금융결제원 포함)
공 통	—	—

【상황 I】

한국은행 회계서버와 증계기기(통신회선 포함)는 정상적으로 가동되지만 참가기관의 서버 또는 증계기기(통신회선 포함)에 장애가 발생하여 국고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

□ 업무 복구(Resumption) 계획

2. 물적재해[기획재정부(dBrain)*]

* 연계 취급기관 포함

단위업무	한국은행	기획재정부(dBrain) (연계취급기관 포함)
(1) 국고금 수납	[당일중 장애] - 장애 복구시까지 대기한 후 송신	[당일중 장애] - 장애 복구시까지 대기한 후 수신
	[익일이후 장애 지속시] - 국고금 수납내역(F8) 및 정정내역(F1) 파일을 대체매체를 통해 송부 - 세입금 청구정정 처리결과(G8) 파일 송수신은 복구시까지 중단	[익일이후 장애 지속시] - 국고금 수납내역(F8) 및 정정내역(F1) 파일은 대체매체를 통해 접수하여 처리 - 세입금 청구정정(A9) 파일 송수신은 복구시까지 중단
(2) 실시간 전자이체	[이체의뢰 수신전 장애발생] - 장애 복구시 까지 대기 - 긴급 지출건은 지출관으로부터 「국고금 입금(대체)요구서」를 제출받아 지급 처리 ○ 계정 및 계좌잔액 확인 요청 시 유선, 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송부	[이체의뢰전 장애발생] - 장애 복구시까지 대기 - 지출관은 긴급 지출건에 한해 「국고금 입금(대체)요구서」를 작성하여 송부 ○ 계정 및 계좌잔액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유선 요청
	[이체의뢰 수신후 마감시까지 미복구] <이체처리결과 미송신> - 이체처리결과 미응답 건에 대하여는 「국고금 실시간 이체거래 처리결과 통보」(별지 제63호 서식)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송부	[이체의뢰후 마감시까지 미복구] <이체처리결과 미수신> - 이체처리결과 미수신건에 대하여는 「국고금 실시간 이체거래 처리결과 통보」(별지 제63호 서식)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처리

단위업무	한국은행	기획재정부(dBrain) (연계취급기관 포함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거래집계 및 거래내역 대사는 「국고금 실시간 이체거래 집계 결과 통보」(별지 제64호 서식)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송부 - ‘예비종료’ 또는 ‘거래종료’ 등 실시간 운영거래에 대한 응답은 생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거래집계 및 거래내역 대사는 「국고금 실시간 이체거래 집계 결과 통보」(별지 제64호 서식)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처리 -
	<p><파일송수신(온라인대체)방식 지급 처리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획재정부에서 “파일 송수신(온라인대체 처리)방식”에 의한 국고금 지급”을 요청하는 경우 정해진 방식에 따라 파일을 수신하여 지급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파일로 송신 <p>* 파일 송수신(온라인대체 처리)방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급업무 수행</p>	<p><파일송수신(온라인대체)방식 지급 처리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dBrain업무지속계획」에 의거 “파일 송수신(온라인대체처리)방식”에 의한 국고금 지급”이 필요한 경우 정해진 방식에 따라 파일을 생성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인편으로 송부 <p>* 파일 송수신(온라인대체 처리)방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급업무 수행</p>
(3) 국세환급금 지급(계좌 확인 포함)	<p>[이체의뢰 수신전 장애발생]</p> <p><15:00시 이전 복구가능시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애 복구후 처리 <p><15:00시까지 복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세청으로부터 국세환급 이체의뢰(A4) 파일을 대체매체(가급적 전자문서교환방식 이용)로 접수하여 일괄처리 후, 금융기관앞 국세환급 지급의뢰 - 국세환급금 심사·지급결과(G3, G6) 파일을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대체매체로 국세청앞 송부 	<p>[이체의뢰전 장애발생]</p> <p><15:00시 이전 복구가능시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애 복구후 처리 <p><15:00시까지 복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세청은 국세환급 이체의뢰(A4) 파일을 대체매체(가급적 전자문서교환방식 이용)를 통해 한국은행 본부앞 송부 o 대체매체에 의한 경우에도 15시까지 제출 완료 - 국세환급금 심사·지급결과(G3, G6) 파일을 대체매체 등을 통해 접수하여 확인
	<p>[이체의뢰 수신후 장애발생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세환급금 심사·지급결과(G3, G6) 파일을 대체매체 등을 통해 송부 	<p>[이체의뢰후 장애발생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세환급금 심사·지급결과(G3, G6) 파일을 대체매체 등을 통해 접수하여 확인

단위업무	한국은행	기획재정부(dBrain) (연계취급기관 포함)
(4) 국고예금 거래내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고예금 거래내역(F9) 파일 송신을 생략 o 추후 대체매체로 전송하거나 장애복구 후 전송 	-
(5) 국고관련 정보파일 송수신	<p>[당일중 복구가능시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애 복구후 송신 <p>[당일중 미복구시]</p> <p><업무처리에 직접 필요한 정보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체매체로 송수신하거나 서면으로 송부 o 국고금 B/S(F1,F2), 국고업무 정보(F3), 계정잔액 내역(GC) o 월말인 경우 국고예금 월계대사확인 의뢰(G2), 국고예금 월계대사확인 결과(A7) <p><기타 정보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애가 4일이상 장기화 될 경우 대체매체로 송수신하거나 서면으로 송부 o 월계대사(G1), 국고예금 월계대사확인 의뢰(G2), 국고예금 월계대사확인 결과(A7), 국고예금 계좌내역(GA), 국세수납 정리계정 이체내역(GB,GE), 국세환급 지급의뢰합계(GD) 	<p>[당일중 복구가능시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애 복구후 수신 <p>[당일중 미복구시]</p> <p><업무처리에 직접 필요한 정보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체매체로 송수신하거나 서면으로 송부토록 요청 o 국고금 B/S(F1,F2), 국고업무 정보(F3), 계정잔액 내역(GC) o 월말인 경우 국고예금 월계대사확인 의뢰(G2), 국고예금 월계대사확인 결과(A7) <p><기타 정보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애가 4일이상 장기화 될 경우 대체매체로 송수신하거나 서면 송부토록 요청 o 월계대사(G1), 국고예금 월계대사확인 의뢰(G2), 국고예금 월계대사확인 결과(A7), 국고예금 계좌내역(GA), 국세수납 정리계정 이체내역(GB,GE), 국세환급 지급의뢰합계(GD)

□ 업무 복원(Restoration) 계획

단위업무	한국은행	기획재정부(dBrain) (연계취급기관 포함)
(1) 국고금 수납	—	—
(2) 실시간 전자이체	—	—
(3) 국세환급금 지급(계좌 확인 포함)	—	—
(4) 국고예금 거래내역	- 미전송 국고예금 거래실적(F9)을 전송하거나 대체매체로 송부	- 복구후 미수신 국고예금 거래내역 송부 요청
(5) 국고관련 정보파일 송수신	—	—

【상황 II】

한국은행 회계서버는 정상적으로 가동되지만 국고전산망 증계기기에 장애가 발생하여 참가기관과의 파일 송수신 등 국고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

□ 업무 복구(Resumption) 계획

단위업무	한국은행	기획재정부(dBrain) (연계취급기관 포함)
(1) 국고금 수납	[당일중 복구시] - 국고금 수납내역(F8) 및 정정내역(F1) 파일은 장애복구시 까지 대기한 후 송신	[당일중 복구시] - 국고금 수납내역(F8) 및 정정내역(F1) 파일은 장애복구시 까지 대기한 후 수신
	[당일중 복구가 어려울 경우] - 국고금 수납내역(F8) 및 정정내역(F1) 파일을 생성하여 대체매체를 통해 송부 - 세입금 청구정정(A9) 및 정정처리결과(G8) 파일 송수신은 복구시까지 중단	[당일중 복구가 어려울 경우] - 국고금 수납내역(F8) 및 정정내역(F1) 파일을 대체매체로 수신하여 처리 - 세입금 청구정정(A9) 및 정정처리결과(G8) 파일 송수신은 복구시까지 중단
(2) 실시간 전자이체	[이체의뢰 수신전 장애발생] - 장애 복구시 까지 대기 - 긴급 지출건은 지출관으로부터 「국고금 입금(대체)요구서」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지급 처리 ○ 계정 및 계좌 잔액 확인 요청 시 유선, 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송부	[이체의뢰전 장애발생] - 장애 복구시 까지 대기 - 지출관은 긴급 지출건에 한해 「국고금 입금(대체)요구서」를 작성하여 지출 의뢰 ○ 계정 및 계좌 잔액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유선 요청

단위업무	한국은행	기획재정부(dBrain) (연계취급기관 포함)
	<p>[이체의뢰 수신후 장애발생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체처리결과 미응답건에 대하여는 「국고금 실시간 이체거래 처리결과 통보」(별지 제63호 서식)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송부 - 거래집계 및 거래내역 대사는 「국고금 실시간 이체거래 집계 결과 통보」(별지 제64호 서식)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송부 - ‘예비종료’ 또는 ‘거래종료’ 등 실시간 운영거래에 대한 응답은 생략 	<p>[이체의뢰후 장애발생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체처리결과 미 수신건에 대해서는 「국고금 실시간 이체거래 처리결과 통보」(별지 제63호 서식)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처리 - 거래집계 및 거래내역 대사는 「국고금 실시간 이체거래 집계 결과 통보」(별지 제64호 서식)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처리 - ‘예비종료’ 또는 ‘거래종료’ 등 실시간 운영거래에 대한 응답 없이 종료
	<p>[장애가 장기화 될 경우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특정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지출관은 동 계좌로 일괄지급의뢰하고 세부 계좌입금내역은 대체매체로 전달하는 방안 강구 - 국고수표 사용 및 서면처리 결정시 ‘상황 V’의 대응계획에 따라 처리 	<p>[장애가 장기화 될 경우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특정은행을 통한 지출방안을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과 협의 - 기획재정부는 국고수표 사용 및 서면처리 여부를 결정
(3) 국세환급금 지급(계좌 확인 포함)	<p>[이체의뢰 수신전 장애발생]</p> <p><14:00시 이전 복구가능시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애 복구후 처리 <p><14:00시까지 복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세환급금 이체의뢰(A4) 및 심사·지급결과(G3,G6) 파일을 대체매체를 통해 송수신 	<p>[이체의뢰전 장애발생]</p> <p><14:00시 이전 복구가능시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애 복구후 처리 <p><14:00시까지 복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세환급금 이체의뢰(A4) 및 심사·지급결과(G3,G6) 파일을 대체매체를 통해 송수신
	<p>[이체의뢰 수신후 장애발생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세환급금 심사지급결과(G3,G6) 중 미송신 파일은 대체매체 등으로 송신 	<p>[이체의뢰후 장애발생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세환급금 심사지급결과(G3,G6) 중 미수신 파일은 대체매체 등으로 수신하여 처리

단위업무	한국은행	기획재정부(dBrain) (연계취급기관 포함)
	<p>[장기 장애시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애가 장기화 될 경우 금융결제원의 대량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안 등을 국세청과 협의 	<p>[장기 장애시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세청은 장기 장애시 한국은행 본부와 국세환급금 지급방법에 대한 협의 실시
(4) 국고예금 거래내역	<p>[당일중 복구가능시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애 복구후 전송 	-
	<p>[당일중 미복구시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미송신된 국고예금 거래내역(F9) 파일을 대체매체를 통해 송부 - 이자지급일에 장애발생시 이자내역(G9) 파일을 대체매체를 통해 송부 	<p>[당일중 미복구시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고예금 거래내역(F9) 파일을 대체매체로 접수하여 처리 - 국고예금 이자지급일에 장애발생시 이자내역(G9) 파일을 대체매체로 접수받아 처리
(5) 국고관련 정보파일 송수신	<p>[당일중 복구가능시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애 복구후 송신 	<p>[당일중 복구가능시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애 복구후 수신
	<p>[당일중 미복구시]</p> <p><업무처리에 직접 필요한 정보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체매체로 송수신하거나 서면으로 송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고금 B/S(F1,F2), 국고업무 정보(F3), 계정잔액 내역(GC) ○ 월말인 경우 국고예금 월계대사확인 의뢰(G2), 국고예금 월계대사확인 결과(A7) 	<p>[당일중 미복구시]</p> <p><업무처리에 직접 필요한 정보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체매체로 송수신하거나 서면으로 송부를 요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고금 B/S(F1,F2), 국고업무 정보(F3), 계정잔액 내역(GC) ○ 월말인 경우 국고예금 월계대사확인 의뢰(G2), 국고예금 월계대사확인 결과(A7)

단위업무	한국은행	기획재정부(dBrain) (연계취급기관 포함)
	<기타 정보> - 장애가 4일 이상 장기화 될 경우 대체매체로 송수신하거나 서면으로 송부 ○ 월계대사(G1), 국고예금 월계대사확인 의뢰(G2), 국고예금 월계대사확인 결과(A7), 국고예금 계좌내역(GA), 국세수납 정리계정 이체내역(GB,GE), 국세환급 지급의뢰합계(GD)	<기타 정보> - 장애가 4일 이상 장기화 될 경우 대체매체로 송수신하거나 서면 송부를 요청 ○ 월계대사(G1), 국고예금 월계대사확인 의뢰(G2), 국고예금 월계대사확인 결과(A7), 국고예금 계좌내역(GA), 국세수납 정리계정 이체내역(GB,GE), 국세환급 지급의뢰합계(GD)

□ 업무 복원(Restoration) 계획

단위업무	한국은행	기획재정부(dBrain) (연계취급기관 포함)
공 통	—	—

【상황 III】

한국은행 회계서버 관련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등에 장애가 발생하여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국고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

□ 업무 복구(Resumption) 계획

단위업무	한국은행	기획재정부(dBrain) (연계취급기관 포함)
공 통	[장애중 처리업무] - 아래업무를 제외하고는 복구시까지 중단 ○ 지출관으로부터 「국고금 입금(대체)요구서」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지급 · 잔액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산 복구후 ‘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정부대출을 실행’ 하는 조건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전적으로 일시차입신청서를 접수 후 처리 * 당해연도의 “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 조건”(금융통화위원회 의결)범위내 ○ 우정사업본부의 어음교환 등 차액결제, 우체국과초금 수납 및 우체국자금 지급업무* * 예탁금잔액 부족시 예탁금 운용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차기신청서를 제출받아 처리	[장애중 처리업무] - 장애복구시까지 대기 ○ 긴급 지출건에 대하여는 지출관이 「국고금 입금(대체)요구서」를 작성하여 송부 · 기획재정부는 전산복구후 ‘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정부대출을 실행’ 하는 조건으로 일시차입신청서를 한국은행앞 송부
	[장애복구에 2시간이상 소요예상] - 재해복구센터로 전환하여 업무 재개(상황IV)	—
	[당일중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] - 당일중 복구 및 재해복구센터로의 전환이 불가능 한 경우 수작업에 의한 국고업무 재개(상황V)	[당일중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] - 국고여유자금은 부처별로 계속 운영하고 일반 국고금 등은 금융기관에 납부

□ 업무 복원(Restoration) 계획

단위업무	한국은행	기획재정부(dBrain) (연계취급기관 포함)
(1) 공 통	[당일중 장애복구시] - 장애기간중 수작업으로 처리한 업무* 전산입력 및 마감 * 우정사업본부의 어음교환 등 차액결제, 우체국과초금 수납 및 우체국자금 지급, 세입금 수납 등	—
(2) 국고금 수납	[익일이후 장애복구시] - 금융기관으로부터 미송신 국고금 수납내역을 복구일의 수납내역(A1) 파일에 포함하여 수신 - 장애기간중의 세입금 청구정정(A9) 및 정정처리결과(G8)는 장애 복구일의 파일에 포함하여 송수신	[익일이후 장애복구시] - 장애기간중 금융기관이 송신하지 못한 국고금 수납 및 정정내역이 복구일자의 파일에 포함됨 - 장애기간중의 세입금 청구정정(A9) 및 정정처리결과(G8)는 장애 복구일의 파일에 포함하여 송수신
(3) 실시간 전자이체	—	—
(4) 국세환급금 지급(계좌 확인 포함)	[익일이후 장애복구시] - 장애기간중의 국세환급이체의뢰(A4)는 장애복구일의 파일에 합산토록 요청	[익일이후 장애복구시] - 장애기간중의 국세환급이체의뢰(A4)는 장애복구일의 파일에 합산하여 전송
(5) 국고예금 거래내역	[익일이후 장애복구시] - 금융기관으로부터 미송신 국고예금 거래내역(A3)을 장애복구일의 거래내역에 포함하여 수신 ○ 장애기간중 거래는 기산일 거래로 처리	[익일이후 장애복구시] - 장애기간중 금융기관이 송신하지 못한 거래내역이 복구일자의 파일에 기산일 거래로 처리되어 포함됨
(6) 국고관련 정보파일 송수신	—	—

【상황 IV】

한국은행 주IT센터의 국고전산망 관련 전산기기 등에서 전면장애 또는 재해가 장기간 지속되어 재해복구센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

□ 업무 복구(Resumption) 계획

단위업무	한국은행	기획재정부(dBrain) (연계취급기관 포함)
공 통	- 재해복구센터로의 전환	—

□ 업무 복원(Restoration) 계획

단위업무	한국은행	기획재정부(dBrain) (연계취급기관 포함)
공 통	- 거래내역 정상처리여부 검증 ○ 주IT센터에서 처리한 거래내역과 재해복구센터에서 처리한 거래내역이 장애복구 후 주IT센터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는지 검증	—

【상황 V】

한국은행 주IT센터 및 재해복구센터의 국고전산망 관련 전산기기 등에 전면 장애 또는 재해가 동시에 발생하여 양 센터 모두 장기간 복구가 불가능하고 수작업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상황

업무 복구(Resumption) 계획

단위업무	한국은행	기획재정부(dBrain) (연계취급기관 포함)
공 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국고업무 수작업 지침 및 매뉴얼」에 따른 업무별 세부 처리지침 통보 ○ 필요시 기획재정부와 ‘국고수표에 의한 국고금 지급’ 실시 관련 협의 - 수작업에 의한 국고업무 재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각 관서와 국고업무 수작업 실행 지침 안내 - 각 관서의 회계직관계공무원은 수작업에 의해 국고업무 수행 ○ 국고수표에 의한 국고금 지급 시에는 한국은행의 「국고업무 수작업 지침」 참조

업무 복원(Restoration) 계획

단위업무	한국은행	기획재정부(dBrain) (연계취급기관 포함)
공 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본부 및 통할점은 수작업에 의한 국고업무 취급 건을 전산시스템에 입력 등 조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각 회계직관계공무원은 수작업 취급건이 한국은행의 전산복원 결과와 일치하는지 여부 검증

【상황 VI】

한국은행 본부에 재해가 발생하여 본부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, 재해가 장기간 지속되어 대체근무장소(강남본부)로의 근무지 이동이 필요한 상황

업무 복구(Resumption) 계획

단위업무	한국은행	기획재정부(dBrain) (연계취급기관 포함)
공 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강남본부로 이동하여 국고업무 재개 	—

업무 복원(Restoration) 계획

단위업무	한국은행	기획재정부(dBrain) (연계취급기관 포함)
공 통	—	—

【상황 VII】

한국은행 본부 및 강남본부에서 재해가 발생하여 대체근무장소(대전세종충남본부)로의 근무지 이동이 필요하며, 동시에 주IT센터의 국고전산망 관련 전산기기 등에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센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

□ 업무 복구(Resumption) 계획

단위업무	한국은행	기획재정부(dBrain) (연계취급기관 포함)
공 통	- 대전세종충남본부로의 이동 및 재해복구센터로 전환 후 국고업무 재개	—

□ 업무 복원(Restoration) 계획

단위업무	한국은행	기획재정부(dBrain) (연계취급기관 포함)
공 통	- 거래내역 정상처리여부 검증 ○ 주IT센터에서 처리한 거래내역과 재해복구센터에서 처리한 거래내역이 장애복구 후 주IT센터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는지 검증	—

3. 인 적 재 해

1. 재해상황별 국고업무 수행범위

상황별	상황내용	한국은행의 국고 업무수행 범위
상황 A	한국은행 국고팀 직원 중 소수(20% 미만)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	- 평상시 업무
상황 B	한국은행 국고팀 직원 중 일부(20~50% 미만)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	- 국고 업무지속계획상 중요업무 (3일 이내 복구대상업무)* 수행 * 국고금 지급, 국고자금 결제 및 마감, 국고금 수납, 정보관리(회계직공무원계좌, 대리점의 신설/폐지)
상황 C	한국은행 국고팀 직원 중 상당수(50~75% 미만)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 발생	- 국고 업무지속계획상 필수업무 (1일 이내 복구대상업무)* 수행 * 국고금 지급, 국고자금 결제 및 마감, 국고금 수납
상황 D	한국은행 국고팀 직원 중 대다수(75% 이상)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	- 국고 업무지속계획상 핵심업무 (2시간 이내 복구대상업무)* 수행 * 국고금 지급
상황 E	한국은행 국고팀에 인적재해가 발생한 데다 해당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	- 국고 업무지속계획상 필수업무 (1일 이내 복구대상업무)*를 원칙으로 하되 결원직원 상황에 따라 수행 업무를 확대 * 국고금 지급, 국고자금 결제 및 마감, 국고금 수납

2. 업무별 복구목표시간 및 우선순위(한국은행)

단 위 업 무	복구 목표시간	복구 우선순위
국고금 지급	2시간 ^주	1
국고자금 결제 및 마감	1일	2
국고금 수납	1일	3
정보관리(회계직공무원계좌, 대리점의 신설/폐지)	3일	4
월계대사 및 계산증명	1주일	5

주 : 대전세종충남본부로의 이동시에는 3시간임

<별지 제63호 서식>

국고금 실시간 이체거래 처리결과 통보

(년 월 일)

수신 :

귀 기관이 요청한 실시간 이체거래 전문의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.

1. 이체거래 내역 및 처리결과

업무 종류	
전문 번호	
입금요청 계좌	
채권자명	
채권자 실명번호	
입금 요청액	
이체 처리결과 코드	

* 이체거래 내역이 2건 이상인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

2. 서면 통보사유 :

발신 :

* 문서의 발신명칭은 해당 기관의 관련 업무 담당 팀(과)장 이상으로 함

<별지 서식>

- 1. 국고금 실시간 이체거래 처리결과 통보(별지 제63호 서식)
- 2. 국고금 실시간 이체거래 집계결과 통보(별지 제64호 서식)
- 3. 국고전산망 장애발생(복구) 보고서(별지 제65호 서식)

<별지 제64호 서식>

국고금 실시간 이체거래 집계결과 통보

(년 월 일)

수신 :

국고전산망에 의한 실시간 이체거래 집계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.

1. 당일 중 처리한 이체거래 등에 대한 집계 결과

구 분	건 수	금 액 (원)
성 공		
실 패		

주 : 개별 이체처리 내역(기관코드, 전문관리번호, 처리기관코드, 처리결과코드, 계좌번호, 금액)을 별도 첨부(처리 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Excel파일로 송부)

2. 서면 통보사유 :

발신 :

* 문서의 발신명칭은 해당 기관의 관련 업무 담당 팀(과)장 이상으로 함

<별지 제65호 서식>

국고전산망 장애발생(복구) 보고서¹⁾

(참가기관용)

기관명		
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발생 보고 <input type="checkbox"/> 경과 보고 <input type="checkbox"/> 종료 보고	
장애발생 시각	○○○○년 ○○월 ○○일 ○○시 ○○분	
복구예상 시간		
장애종료(예정)시각	○○○○년 ○○월 ○○일 ○○시 ○○분	
장애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하드웨어 <input type="checkbox"/> 소프트웨어 <input type="checkbox"/> 네트워크 <input type="checkbox"/> 시설 ²⁾ <input type="checkbox"/> 인적오류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_____)	
장애정도 ³⁾	<input type="checkbox"/> 1 <input type="checkbox"/> 2 <input type="checkbox"/> 3 <input type="checkbox"/> 4 <input type="checkbox"/> 5	
장애현상 및 원인		
조치내용		
기타(특기사항 등)		
연락처	(업무담당) ■ 부서명: ■ 직위: ■ 성명: ■ 전화: ■ 이메일:	(IT담당) ■ 부서명: ■ 직위: ■ 성명: ■ 전화: ■ 이메일:

주: 1) 국고전산망 단말기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대비하여 '국고 업무지속계획 (참가기관용)'과 함께 서면 출력하여 별도 보관

2) 화재, 자연재해 등에 의한 시설(사무실 등) 손상, 정전 등

Ⅲ 비상연락 체제 및 수단

1 비상연락 체제

-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의 장애 또는 재해 발생시 참가기관 행동지침 및 업무전환 결정사항 통보 등의 긴급연락을 위하여 한국은행과 참가기관간의 비상연락체제를 운영
- 비상연락 담당자는 각 금융기관의 국고업무주관부서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업무 실무 책임자로 구성

☞ 비상연락 담당자 및 연락처 변경시 한국은행 국고팀 앞으로 즉시 통보

2 비상연락 수단

- 한국은행 본부(국고팀)는 국고전산망 장애 및 재해 발생시 관련 참가기관에 다양한 통신수단*을 통해 상황을 전파
 - * 유·무선 전화, 모사전송(fax), 한은금융망 단말기, 한국은행 홈페이지, e-mail 등
- 비상상황 발생시 장애·재해 발생상황 및 관련 처리절차 등은 한국은행 홈페이지(www.bok.or.kr)*에 게시
 - * 금융안정 메뉴의 국고·증권 하위항목에 있는 '국고·증권업무자료'
- 각 참가기관의 담당자는 참가기관 통신망 혹은 단말기 등의 장애나 재해 발생시 다양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한국은행 국고팀앞 통보